



옥당골소식

제560호
2022.7.25.(월)

♡군민을 위한 유익한 정보지♡

목 차

I. 군정 소식

1.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3
2. 우리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4
3.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5
4.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군비 확대지원	6
5. 임신부(해피맘) 교통카드 지원사업	8
6. 영광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안내	9
7.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
8. 2022년도 찾아가는 문화강연 운영	11
9. 영광군 마을세무사 운영 안내	12
10. 영광군 미등록 농가주택 건축물대장 생성 지원 안내	13

11. 2022년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14
12. 영광군 치매안심센터 운영 안내	16
13. 치매조기검진 사업 확대 안내	17
14.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확대 안내	18
15.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안내	19
16. 치매파트너 온라인 교육 이수 안내	20
17. 치매가맹점 모집 안내	21
18. 치매 어르신 실종예방 지원 사업	22
19. 치매예방수칙 3·3·3	23
20.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확대지원	24
21. 산불예방 안내	25

목 차

II. 기타 소식

1. 전남 민관협력형 배달앱 ‘먹깨비’ 출시	26
2. 영유아 구강검진 확대 시행	29
3. 제증명 온라인발급 확대를 통한 국민편의 증진	30
4.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 안내	31
5. 금연치료지원사업 안내	32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 지급 원칙,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 사회복지시설 보호 영유아등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없음
 - ※ 다만,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 요망
- 사용기간 : 이용권 지급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 다만, 시설입소아동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 신청방법
 - (방문) 신생아 주소지 읍·면사무소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복지포(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 지원절차
 -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 신청인이 금융기관 직접신청) → 지원결정통보(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 지급
- ☎ 문의사항 :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결혼출산팀(350-4673)

우리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 지원내용
 - 아기 탄생 기쁨 기념할 수 있는 아기 주민등록증 제작(법적효력 X)
 - 기재사항
 - (앞면) 아기이름, 생년월일, 주소, 사진 등
 - (뒷면) 성별, 태명, 혈액형, 키/몸무게, 부모이름, 부모님 소망 등
-
- 신청방법 : (방문) 신생아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온라인) 정부24
 - 지원절차
 -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 제작 및 배부
※ 군청 직접수령 원칙
 - ☎ 문의사항 :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결혼출산팀(350-4673)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21. 1. 1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②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부부
- (거주) ①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직전 도내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②축하금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결혼축하금 신청일 까지 계속해서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만 49세 이하의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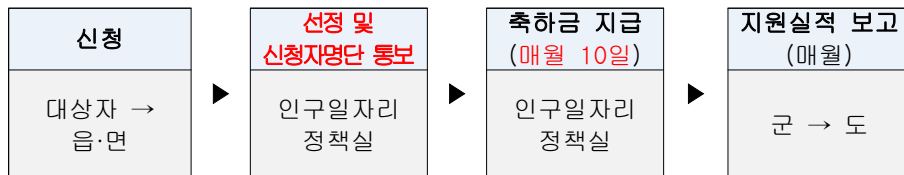
○ 1부부당 2백만원 ※ **영광군 결혼장려금과 중복지급불가**

□ 지원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및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 통장 사본 1부

□ 지원절차



☎ 문의사항 :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결혼출산팀(350-4813)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군비 확대지원

□ 기 간 : 연중

□ 지원대상 및 내용

시술 종류 및 횟수 (건강보험 정부지원 적용 횟수)			정 부 지 원		군비 추가지원 (정부지원 횟수 동일)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110만원	90만원	150만원 이내
	동결배아	1~7회	50만원	40만원	50만원 이내
인공수정		1~5회	3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내

※ 정부·군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시술 시작일 22. 1. 1.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횟수에 한하여 매 회 시술종류 및 기준대로 지급

○ 정부지원

-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자로 시술시작일 기준 부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광군인 자
- 의료기관 시술 전 군 인구일자리정책실로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제출 후 자격 판정 필요

○ 군비 추가지원

- 시술별 **건강보험 정부지원 적용횟수에 한하여** 시술시작일 기준 부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광군인 자
- 정부지원 해당자의 경우 정부지원금 우선 적용 후 군비 차액 지원

□ 신청장소 : 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 군비 추가지원 신청기한 :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제출서류

○ 정부지원 + 군비지원 해당자

- 난임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 시술기간내 원외약품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약 이름, 금액 필히 기재)
- 입금통장사본 1부

○ 군비지원 해당자

- 난임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 시술확인서 1부(시술명, 시술기간, 차수, 임신여부 반드시포함)
- 진료비 영수증 1부(치료기간이 의사소견서 상의 시술기간과 동일)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시술기간내 원외약품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약 이름, 금액 필히 기재)
- 입금통장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지원절차

○ 정부지원 + 군비지원 해당자 : 인구일자리정책실 지원 신청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 난임시술 완료 → 서류 검토 후 지급

○ 군비지원 해당자

난임시술 완료 → 인구일자리정책실 지원 신청 → 서류 검토 후 지급

☎ 문의사항 :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결혼출산팀(350-4813)

임신부(해피맘) 교통카드 지원사업

□ 기 간 : 연중

□ 지원대상

- 군에 임신부 등록을 한 사람으로 신청일 기준 군에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지원내용

- 1인당 30만원 교통카드 지원(1인당 1회 한함)
- 택시 및 버스 이용 시 교통카드로 결제

□ 지원신청

- 신청장소 : 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결혼 출산팀
- 제출서류
 - 임신부(해피맘) 교통카드 지원 신청서
 - 임신사실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지원절차

- 임신 사실 확인서 지참 → 인구일자리정책실 신청 → 임신부 교통카드 발급신청서 작성 → 교통카드 발급

☎ 문의사항 :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결혼출산팀(350-4813)

영광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안내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성평등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광군에 거주하는 군민 중 육아 휴직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아빠 육아휴직 자원금 지원

- 영광군은 아빠의 육아를 응원 합니다! -

- 신청기간: 2022. 4. 6. ~ 계속
- 지원대상: 남성 육아휴직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① 2022. 4. 6.일 이후 육아 휴직한 남성 근로자
 - ② 장려금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③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④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 제11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수당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지원금액: 월 50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 / 영광사랑카드
- 사용기간: 장려금 수령 후 2년(24개월)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매월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최초 신청시, 휴직대상아동 변경 시)
 -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월 단위로 발급)
- 기타문의: 읍·면사무소 및 노인가정과 여성가족팀(061-350-5549)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까지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 지원개요

- 신청접수: 2022. 6. 30.~
 - ┌ 신속보상 : '22. 6. 30.(목)~
 - └ 확인요청 : '22. 7. 5.(화)~
- ※ 확인요청 :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요건 검토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지원대상: ' 22. 1. 1.~3. 31. 동안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방역조치	대상 시설
영업시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PC방 ■ 마사지업소·안마소 ■ 오락실·멀티방 ■ 평생직업교육학원
시설 인원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이·미용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실외체육시설 ■ 키즈카페

- 지급금액: 보정률 100%(하한액 분기 100만원/ 상한액 분기 1억원)

< ' 22.1분기 손실보상금 기본산식 >

보상금 산정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 또는 영광군청 경제에너지과 방문 접수
 - ※ 온라인 신청 첫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5부제 실시

2022년도 찾아가는 문화강연 운영



영광군
YEONGGWANG-GUN

찾아가는 문화강연

2022 영광군

장 소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 **일 정** 2022년 4월~10월 16시~18시
예 약 인터넷 : 영광군 홈페이지 (교육복지→평생학습→사업소개)
 전 화 : 061-350-4705

구분	분야	주제	강사
4. 26(화)	인문학	희망을 말한다.	박준영 변호사
5. 31(화)	역사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신병주 교수
9. 27(화)	여행	마을버스를 타고 세계여행을 떠나다.	임택 여행작가
10. 25(화)	문화	행복한 보호자가 행복한 반려동물을 만든다.	이찬중 소장

2022년도 영광군 찾아가는 문화강연 강사

박준영 변호사

- 제1사건 전문변호사
- 안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 변호사
- 변호사법률법률사무소 변호사

신병주 교수

-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 외교통상부 외교장관도서 전문포럼 위원
- 서울대 규장각 학예연구사
- JTBC<차이나는 몰라>, KBS1<역사재널 그날> 출연

임택 여행작가

- 윤석 후 날은 마을버스와 함께 48개국 여행
- tvN<유 퀴즈 온 더 블록>, CBS<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KBS <이심어린> 등 출연
- 저서 <마을버스, 세계를 가다>

이찬중 소장

- 이시애연륜연구소 소장
- 서울중앙예술실용학교 애완동물계열 특임교수
- 한국애견연맹 문헌사유권회 위원
- SBS<TV동물농장>, <상할의 달인> 등 다수 출연

영광군 마을세무사 운영 안내

취약계층 및 영세사업자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군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세무행정서비스

□ 마을세무사의 역할

-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 상담(청구액 3백만 원 미만)
 - ※ 상담의 범위에 각종 신고서 작성 대행·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음

□ 이용 대상

-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 어려운 주민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5억 원 이상 재산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

□ 주민 이용 방법

- **마을세무사 확인:** 군청 및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된 마을세무사 명함, 관련 기관(행안부, 시도, 시·군·구 등)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지역의 마을세무사를 확인
- **1차 상담:** 전화, 팩스, 이메일 상담
- **2차 상담:** 전화·팩스·이메일 상담으로 부족한 경우, 2차 상담을 원하는 주민과 마을세무사간 시간·장소를 정하여 추가 면담

□ 영광군 마을세무사 명단

관할지역	세무사성명	전화번호	비 고
영광군 전체	김광복	061-351-8150	
	정승환	061-351-5400	

영광군 미등록 농가주택 건축물대장 생성 지원안내

건축물대장 미등록 농가주택의 건축물대장 생성지원하여 국가수해 사업신청 제척·건물보험 가입·재산권 행사 등 불편사항 해소

1. 2022년도 사업분(100동) 접수기간 : 2022년 3월 22일 ~ 12월 31일
 ※ 사업기간/사업량 : 2022년~2024년(3년간)/총 300동
2. 신청장소 : 종합민원실 주택팀
3. 지원사항 : 건물도면 작성 및 현황측량성과도 작성
4. 신청가능대상 : 건축물대장 미등록 무허가 단독주택(창고, 점포 등은 제외)
 - 비도시지역의 건축법 개정 이전(2006. 5. 8.) 주택으로 200㎡미만이면서 2층 이하
 - 토지이음 등 확인결과 해당 주소가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일 경우 도시지역 지정 이전 주택
 - 대지안의 공지 및 건폐율 등 적법한 주택
 - ※ 읍·면사무소에서 건물 재산세과세내역 등을 통해 신축년도 사전확인 후 상담
 - 토지 소유권 일치
 - 토지소유자와 불일치 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 한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 지목이 전·답·임야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 ※ 대지 내 불법건축물이 존재하거나 타 필지로 건축물이 침범한 경우 신청불가
 - 무허가건축물: 건축법 개정 이전(2006. 5. 8.) 허가 없이 건축 가능한 건축물
 - 불법건축물: 건축허가(신고)대상이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축조한 건축물
 - 도시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5. 문의처: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주택팀 ☎061-350-4682

2022년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중인 지하수시설을 양성화하여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독려

□ 자진신고기간 : 2022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 (1년)

□ 자진신고대상

- 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나.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자진신고방법

- 가. 신고기관 : 영광군청 건설과 건설행정팀 지하수 담당
- 나. 신고서류 : 다음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시공업체 대행 가능)

구분	제출서식	구비서류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지하수영향조사서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 자진신고자 혜택

- 가. 「지하수법」 제37조 제1호 및 제38조(제37조제1호 관련), 제39조 제1호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 나. 이행보증금 면제
- 다.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제출면제

□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

구분	위반내용	벌칙·과태료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치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7조제1호)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조치	·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제1호)

□ 문의사항

- 영광군 건설과 건설행정팀 문의(☎061-350-5486)

영광군 치매안심센터 운영 안내

치매예방, 등록, 상담, 조기진단,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등 통합 돌봄 문화 확산에 기여

- 기 간 : 연중, 월 ~ 금요일(9시~18시)
- 장 소 : 영광군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
- 대 상 : 지역주민,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가족
- 내 용
 - 치매조기검진(선별검사, 진단검사 I·II)/치매감별검사-협약병원 의뢰
 - 치매파트너 양성 및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운영
 - 치매안심마을 지정 유지 관리
 - 치매 공공후견사업 피후견인 대상자 발굴 및 지원 등
 -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운영
 - 치매환자 및 가족지원
 - 배회어르신 지문사전등록 및 배회감지기 보급: 기기 및 이용료 지원
 - 조호물품(위생소모품) 제공 : 기저귀, 방수매트, 미끄럼방지양말 등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환자 컴퓨터운영 및 가가호호방문서비스
 - 맞춤형사례관리
 - 치매가족교실(헤아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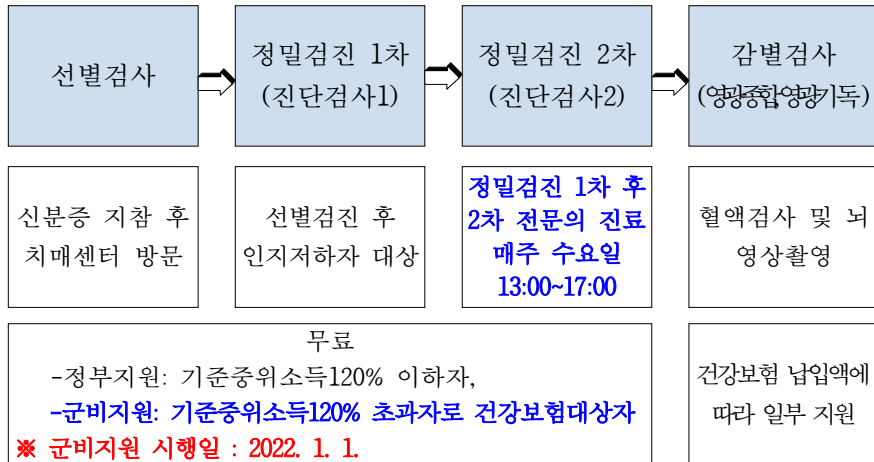
- 문 의 : 영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350-4817)



치매조기검진 사업 확대 안내

- 기 간 : 연중, 월 ~ 금요일(9시~18시)
- 장 소 : 치매안심센터 상담실 2층
- 대 상 :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 준 비 물 :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내 용
 - 만 60세 이상 1년에 1회 치매 선별검사 무료 실시
 - 검사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치매진단검사(1차, 2차)실시
 - 진단검사 후 감별검사 필요시 협력병원(영광종합, 영광기독)의뢰
- 진단검사비(감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자
 - 검진장소 : 협약병원(영광종합병원, 영광기독병원)
 - 지원금액 : 치매검사비 1인당 8만원 상한내 지원

□ 검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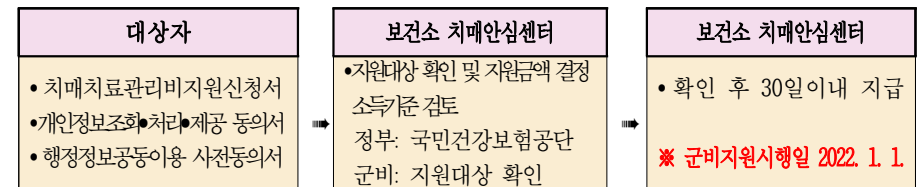


- 기 타 : 선별검사자 치매사업 홍보물 제공(파스, 마스크 등)
- 문 의 : 영광군 치매안심센터(☎350-5659, 350-4806)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확대 안내

- 기 간 : 연중, 월 ~ 금요일(9시~18시)
- 장 소 : 치매안심센터2층
- 대 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치매치료관리비가 필요한자
 - 정부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자
 - 군비지원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한 건강보험대상자
- 지원금액 : 치매검사비 1인당 8만원 상한내 지원
- 신청서류
 - 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 ② 처방전
 - ③ 병원진료영수증-**군비지원**
 - ④ 약품면이 기재된 약국영수증(약제비 계산서)-**군비지원**
 - ⑤ 통장사본 1부
 - ⑥ 행정정보동의서(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신청일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대리신청시 가족관계 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내 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36만원) 이내
 - ※ 치매약제비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 지급
 - ※ 3개월치 약을 8만원에 구입시, 3개월의 상한 금액인 9만원(3개월×월 상한 3만원)이 한도가 되며, **실비인 8만원을 대상자에게 지급**

□ 지원절차



- 문 의 : 영광군 치매안심센터(☎350-4691, 350-4826)

경로당 치매예방교실(뇌 청춘을 돌려줘) 안내

긍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시키는 치매예방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 회복 및 인지기능 향상

- 기 간 : 연중, 월 ~ 금요일(기수별 월 8회)
- 장 소 : 관내 경로당
- 대 상 : 지역주민
- 수행인력 : 외부강사 및 보건소 인력
- 내 용
 - 기본검사 및 치매사업 안내
 - 치매에 대한 바른 이해 및 예방교육
 - 치매예방 인지학습 교육
 - 치매예방 공예치료
 - 치매예방 운동치료
 - 치매예방 원예치료
 - 인지선별 검사
 - 전·후 평가 및 만족도 조사 등
- 선정절차
 - 치매예방교실 운영 신청 접수
 - 센터에서 접근성이 어려운 경로당 우선
(기존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후순위로)
 - 치매예방교실 운영 확정 및 프로그램 운영

□ 문 의 : 영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350-4998, 350-5098)

치매파트너 온라인 교육 이수안내

전 군민이 치매 파트너가 되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고 따뜻한 동반자로 치매 친화적 돌봄 분위기 확산

- 대 상 : 초등학교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 신청절차
 - 인터넷 가입 : 치매파트너 홈페이지(partner.nid.or.kr)에서
치매파트너 온라인 교육 영상 시청(5편/30분)
 - 핸드폰 가입 : 구글 Play스토어 “치매체크” 앱 → 치매극복
함께하기 → “치매파트너 되기”
- 내 용
 - 일상에서 만나는 치매환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배려하기
 - 주변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이 있다면 꾸준히 연락하고 안부 묻기
 - 교육에서 배운 정보 주변에 알리기
- 기 타
 - 치매파트너 가입 온라인 교육 영상 시청 후 **파트너증** 제출 시
치매안심센터운영사업 홍보물 배부

□ 문 의 : 영광군 치매안심센터(☎ 350-4806, 350-4817)

치매가맹점 모집 안내

- 기 간 : 연중, 월 ~ 금요일(9시~18시)
- 신청장소 : 치매안심센터 상담실 2층
- 대 상 : 지역사회 내 치매안심 홍보 가능 점포
- 내 용
 - 개인사업장 구성원이 모두 치매파트너 교육을 받고, 지역사회의
 촉진한 치매안전망 구축에 적극 동참하는 가맹점 지정
 - 온·오프라인 교육 모두 가능
- 주요활동
 - 치매에 관심 갖는 분들에게 치매안심센터 홍보
 - 치매관련 정보 제공(리플렛, 포스터 비치 등)
 - 배회환자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임시보호 역할
- 준비물 : 치매안심가맹점 신청서 1부
 사업자 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 문 의 : 영광군 치매안심센터(☎350-4806, 350-4817)

치매 어르신 실종예방 지원 사업

배회증상으로 실종이 염려되는 치매환자와 실종 어르신에게 배회감지기와 실종예방 인식표를 보급하여 치매환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

- 기 간 : 연중, 월 ~ 금요일(9시~18시)
- 대 상 : 만 60세 이상 배회 성향이 있는 치매 환자
- 내 용
 - 배회감지기 대여 및 가입비 등 사용료 전액 지원
 - 경찰서 시스템과 연계한 치매환자 지문, 사진 등록
 - 배회가능 치매환자 인식표 제작 지원 등
- ※ 치매어르신이 실종되었을 경우 즉시 경찰청 실종신고 ☎112
- 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에 신청서류 제출(방문, 우편, 팩스 등)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서식1,2,3)
 - 대상자 및 가족 신분증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질병 코드가 표기 된 처방전
 -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신청서(서식4)
- 문 의 : 영광군 치매안심센터(☎350-4756)

치매예방수칙 3·3·3

가족이 가장 힘든 질병 1위 치매
일상 속 작은 노력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행복하게 합니다.

치매 예방 수칙
3.3.3

3권
행: 움직이기

-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기
- 생선과 채소 골고루 먹기
- 부지런히 읽고 쓰기

3금
행: 삼가할 것

- 술은 적게 마시기
- 담배는 피지 말기
- 머리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기

3행
행: 행할 것

-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기
- 가족, 친구들과 자주 소통하기
- 매년 치매 조기검진 받기

보건복지부 | 중앙 치매센터
치매상담콜센터 1895-0988 (주말 휴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확대지원

- **접종대상**
 - 만12세 ~ 17세 여성 청소년(2004.1.1.~ 2010.12.31.)
 - 만18세 ~ 26세(1995.1.1.~ 2003.12.31.)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여성

- **접종장소** : 보건소 및 관내위탁의료기관 7개소
* (위탁의료기관 현황) 영광종합병원, 영광기독병원, 김기영내과의원, 서울여성의원, 영광고운의원, 심재영의원, 한국의원

- **접종백신** : 서바릭스(HPV2가), 가다실(HPV4가)

- **접종횟수**

백신 종류	첫 접종 나이**	접종 횟수	접종 일정
서바릭스, 가다실	만 12세 이상 ~ 만 26세 미만 여성	3회	0, 1, 6개월

- **내 용**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 시 대부분 무증상으로 소멸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감염이 유지될 경우 관련 암과 생식기사마귀 등 질병을 유발
-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의 중요성?**
자궁경부암 예방접종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발견 및 완치 가능
-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금기사항 및 주의사항**
백신 함유 성분이나 이전 접종 후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있는 경우
-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는 무엇이 있나요?**
국소반응으로는 접종부위 통증, 발적, 부종 등이 있습니다.

영광군보건소 질병관리과 ☎350-5650

산불예방 안내

산에 가실 때 주의하실 사항

- 성냥,ライター, 버너 등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맙시다.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야영·흡연**을 하지 맙시다.

논·밭두렁 태우기는 잘못된 상식

-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없고** 해로운 벌레보다 이로운 벌레가 더 많이 죽어 농사짓는데 매우 불리합니다.
-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태우기는 **봄철 미세먼지, 산불발생 주요 원인**입니다.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주의하실 사항

-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영농부산물(낙엽, 폐기물), 생활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지 맙시다.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의 소각은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 영광군 산불대책본부(061-350-5351), 읍·면사무소(산업개발팀) 119, 경찰서 등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낸 산불도 강력 처벌대상

- **벌칙**
 -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불이 타인 소유의 산림까지 확산되어 피해를 입힌 때 :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과실로 산불을 낸 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 **과태료**
 - **산림주변 소각할 경우**: **1차적발 30만원, 2차적발 40만원, 3차적발 50만원** 과태료 부과
 - 산림 인접지 외 논·밭에 불 놓다 소방차 출동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자료제공 : 영광군청 산림공원과 ☎ 061-350-5351

전남 민관협력형 배달앱 ‘떡깨비’ 출시

관내 소상공인의 민간 배달앱 사용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전남 민관협력형 배달앱 ‘떡깨비’ 출시

□ 전라남도 민관협력형 배달앱 현황

- (출 시 일) 2022. 7. 14.(목)
- (운영업체) (주)떡깨비(2017년 창립, 본사 대구광역시 소재)
- (배달앱명) 전남 떡깨비

□ 배달앱 혜택

- (소상공인) 중개수수료 1.5%, 가입비 無, 광고료 無
 - ※ 민간앱 중개수수료: 배달의 민족 6.8%-15%, 요기요 12.5%, 쿠팡이츠 15%
- (소 비 자) 지역사랑카드 결제 가능, 출시기념 10,000원 할인(선착순 7,000명)
매주 토요일 3,000원 할인(선착순 300명), 포장할인 1,000원 등

□ 가입 방법

- (소상공인) 인터넷→전남 공공배달앱 검색→떡깨비 사이트에서 신청
 -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등록/ 문의사항 1644-7817
- (소 비 자) 스마트폰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떡깨비’ 앱 다운로드 및 설치



전남 공공배달앱 먹깨비 7월 14일 OPEN

전라남도에서 공공 배달앱 오픈 기념 쿠폰을 드립니다!

※ 첫 주문시 5,000원 즉시 할인
두 번째 주문 시 사용 가능한 5,000원 할인 쿠폰 지급

오픈기념 최대
10,000원
선착순 7,000명


매주 토요일
3,000원
매주 선착순 300명

먹깨비에서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드리는 혜택!


가맹점	소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점비 무료 # 월 사용료 무료 # 주문중개 수수료 1.5% # 상위 노출 무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픈 기념 최대 10,000원 할인 # 매주 토요일 3,000원 할인 # 더블할인 (가맹점 할인을 두 배로) # 포장할인 (포장은 언제나 할인 중)
<p>혜택 ▶ 가입비 無·광고료 無</p> <p>신청 ▶ 1644-7817</p> <p>▶ 인터넷 → 전남 공공배달앱 검색 → 먹깨비 사이트에서 신청</p>	<p>혜택 ▶ 지역사회상품권 결제 가능 ▶ 다양한 쿠폰 이벤트</p> <p>사용 ▶ 스마트폰</p> <p>▶ Google Play 또는 App Store에서 먹깨비 앱 다운로드 및 설치</p> 



전남 공공배달앱 다운로드 방법




01. 플레이스토어 or 앱스토어
전남 공공배달앱 또는 먹깨비
검색 후 앱 다운로드




02. [받기] 누르면
다운로드 완료!


회원가입 방법




01. "먹깨비" 앱 실행




02. 앱 하단부분
마이페이지 선택




03. 화면 상단
회원가입 선택




04. 다음 화면
회원가입 선택



05. 전체 약관 동의 후
다음 단계




06. 개인정보 입력 후
전화번호 인증




회원가입 완료!


음식 주문 방법




01. 먹깨비 홈 화면에서
배달 받을 주소 설정



02. 원하는 음식을
장바구니에 추가



3. 주문 금액 결제
(※지역화폐 사용 가능)



음식 수령!

영유아 구강검진 확대 시행

2022년 6월 30일부터
생후 30~41개월
영유아 구강검진이
확대 시행됩니다.



적용 대상

- '22.6.30.에 생후 30개월 검진이 시작되는 영유아
- ※ 2019년 12월 30일 이후에 출생한 영유아부터 해당 됩니다.

검진 항목

- 치아검사, 기타 검사 및 문진, 진찰 및 상담
- 구강보건교육(보호자 및 유아)

검진 비용

- 건강보험가입자: 공단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검진 절차

- 웹 또는 모바일 문진표 작성



구강검진기관 내원하여 검진 받기

- 검진기관에서 검진료후 보호자에게 결과통보서를 직접 교부함
- ※ 검진기관이 제공하지는 문진표로 수기 작성 가능

구강검진 주기

구분	실시시기
1차 검진	18~29개월
2차 검진	30~41개월
3차 검진	42~53개월
4차 검진	54~65개월

검진기관 찾기



제증명 온라인발급 확대를 통한 국민편의 증진

주요내용

- 모바일 보편화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제증명 비대면(온라인) 발급 확대 추진

추진내용

- (디지털 환경 조성) 우선발급 중단에 따른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비대면 발급 채널 등 확대

마이데이터 확대	행공망외 전용선(공단→행안부) 및 연계서버 구축 (3월)
챗봇서비스 확대	다빈도 증명서 발급서비스 추가 등 검토(4월~)
증명서 파일 다운로드	열람용 파일(PDF) 다운로드 시스템 구축 (3월)
납부자료 연계	국세청 홈택스 4대 보험료 납부자료 연계 (4월~)
전자지갑 도입	종이 및 팩스전송에서 전자증명서로 유통체계 전환 (12월)
고객센터 서비스 강화	전용회선 신설(300~500), 취약계층(65세이상, 장애인) 발급 검토
고객센터 셀프발급 확대	ARS 발급 가능 제증명 확대(2종→5종)

- (전화발급 중단) 비대면 발급 환경 추가 조성과 이용고객 사전안내, 전 국민 홍보 실시 후 지사, 고객센터 전화 신청(23종) 발급 우선 중단(7.1 시행) - 다만, 장애인, 65세 이상은 고객센터 상담사 증명서 발급 유지로 디지털 취약계층 제증명 발급 접근성 보호

- (방문발급 제한적 운영) 관련 범상 방문 민원에 대한 발급 제한은 어려움이 있어 방문고객은 증명서를 발급하되, 방문 신청자 전체에게 제증명 발급과 동시에 문자서비스 실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거절하거나, 발급 제한할 수 없음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 안내

-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란?
 -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부과되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300원)을 음료 값에 포함하여 지불하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사전에 지불한 보증금을 환급받는 제도 *다회용 플라스틱컵, 머그컵 제외
-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시행
- 적용대상은 어디인가요?
 -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판매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등 패스트푸드점 △공차,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으로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 적용됨
- 어떻게 운영되나요?
 - ①판매자가 보증금이 포함된 1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 판매
 - ②소비자가 다 사용한 다음 판매점에 반환 *구매처와 무관
 - ③판매점에서 보증금 환급
 - ④모든 과정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관리
-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의무화되면?
 - 1회용 컵의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어 기존에 1회용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금연치료지원사업 안내



아직도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으셨나요?

니코틴 의존도가 높을 수록 힘든 금연,
병·의원 금연치료를 받으면 쉬워집니다.



- 지원대상**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
- 지원내용**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니코틴 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The건강보험 앱 또는 통합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서 확인
- 인센티브**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 시 산청한 경우 1~2회 본인부담금 환급

